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독업자 및 종사자의 주기적 교육 이수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채용 등〉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635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주요 검토사항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9

I .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20.

(3) 회 부 일 : 2026. 3.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II.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가 주기적으로 소독 교육을 받게 하고, 소독업자는 소독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등).

현행	개정안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u>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u>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 ----- <u>주기적으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u>
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u>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u> <u><신설></u>	② ----- ----- <u>주기적으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u>교육시간</u> ,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58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u>주기, 교육시간</u> ----- ----- -----.
	제58조(시정명령)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

1. (현행과 같음)

2. -----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소
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독업무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5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주요 검토사항

- 현행법 제5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소독업자로 하여금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감염병예방법」

제51조(소독 의무) ①·② (생략)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 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 [별표 7] 소독횟수 기준: [참고 1]

- 또한 현행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소독업자는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독업무 종사자 또한 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 이후 소독업무 종사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독업자가 직접 소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보수교육 의무가 적용됨.

「감염병예방법」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 소독 관련 교육과정은 신규과정과 보수과정으로 구분되고,
교육내용은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관리정책,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안전수칙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기관인 (사)한국방역협회에서 교육을 실시¹⁾하고 있음.

1) <소독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시행규칙 [별표9])>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공중보건, 환경위생,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대상 미생물과 소독방법, 쥐·벌레 등의 생태와 이를 없애는 방법, 소독작업의 안전수칙 및 해독방법. 다만, 공중보건 및 환경위생은 소독업자에만 해당한다.	16시간
<보수교육> 소독업무 종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 실무 및 안전관리	8시간

- 또한 교육 이수 비용(신규과정 90,000원, 보수과정 50,000원)은 현행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소독업자가 종사자의 교육비용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의 주기적인 교육 이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상향입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소독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소독업자까지도 신규 교육과정 이수 후에 주기적인 교육 이수 의무가 추가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²⁾ 및 「식품위생법」 제41조³⁾는,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공중위생영업자 또는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위생교육에 관하여,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2)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3)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소독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 소독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실 소독을 예방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감염병 확산 등 소독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 한편, 현재 운영 중인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둘 다 이수가 필요한데,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교육 주기도 빈번하지 않아⁴⁾, 소독업 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가 채용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는 데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

※ 2026년 소독업무 법정교육 개요 및 집합교육 일정·장소
: [참고 2] 및 [참고 3]

- 따라서 온라인 교육으로의 대체 또는 확대 등, 소독업 구직자가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은 모두 온라인 이수가 가능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보수교육도 온라인 이수가 가능함. 또한, 두 개의 위생교육 모두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4) 2026년 기준 서울, 대전,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 주기도 지역당 연 1회~2회(서울 제외) 실시될 예정임.

5) 소독업무 종사자 채용 시, 온라인 교육 이수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하되, 채용 후 일정 기간 내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교재 배부를 통한 학습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교육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 ⑤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②·③ (생략)

④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9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⑤ ~ ⑪ (생략)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질병관리청 (수정수용)

- ☐ 감염병 예방 목적 달성 및 보건상 위해 방지를 위해 적합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의 사전 및 보수교육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 취지에 동의함.
- ☐ 다만, 본 개정안은 소독업자의 소독업 개설 전 교육의무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임.

2) 한국방역협회 (수용)

- ☐ 교육 미이수자 및 면제 대상자*의 약품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해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전면 수용함.

*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인 자

문 의 처
02)6788-5496

【참고 1】 소독횟수 기준[별표 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 독 횟 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참고 2] 2026년 소독업무 법정교육 개요

○ 교육 기간: 2026.01.19. ~ 12월

- 온라인교육과목 시작(1.19.)
- 집합교육 진행(2.26.)

○ 교육 시간

- 신규교육: 16시간(온라인 8시간, 집합 8시간)
- 보수교육: 8시간(온라인 4시간, 집합 4시간)

※ 온라인교육과목 우선 수강 후 집합교육 과목 추가 수강시 최종 이수

○ 교육대상(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

- 신규교육: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종사자 신규인원
- 보수교육: 소독업무종사자 중 직전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도래한 자
[현장에서 직접 소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독업자(대표자) 포함]

○ 교육비

- 신규과정 90,000원, 보수과정 50,000원

○ 교육 과목 및 시간표

교 과 목		배정시간		
		신규반		보수반
		대표자	종사자	
온라인 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H	2H	2H
	감염병관리 정책			
	공중보건과 환경위생	1H	-	-
	소독작업의 안전수칙 및 해독방법	2H	2H	2H
	소독대상 미생물과 소독방법	2H	3H	-
	소독약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이론)	1H	1H	-
	소계	8H	8H	4H
집합 교육	해충의 생태 및 방제방법	2H	2H	
	쥐의 생태 및 구제방법	2H	2H	
	소독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	2H	2H	1H
	소독약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실무)	2H	2H	1H
	소독실무			2H
	소계	8H	8H	4H
계		16H	16H	8H

자료: 질병관리청

【참고 3】 2026년 소독업무 집합교육 일정 및 장소

구 분		반 편성	일 정	장 소
1/4 분기	영남권	신규 1반	2.26(목)	대구공업대학교 대강당
		보수 1반	2.27(금) 오전	
	수도권	신규 2반	3.12(목)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예정)
		보수 2반	3.11(수) 오후	
	호남권	신규 3반	3.24(화)	광주 테크노파크 국제회의장
		보수 3반	3.25(수) 오전	
2/4 분기	수도권	신규 4반	4.10(금)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
		보수 4반	4.13(월) 오후	
	제주	제주 보수반	4월 22일(수) 오전	제주 테크노파크 대강당
	수도권	신규 5반	5.21(금)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예정)
		보수 5반	5.20(목) 오후	
	영남권	신규 6반	5.27(수)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보수 6반	5.28(목) 오전	
	충부권	신규 7반	6.11(목)	대전 KT인재개발원
		보수 7반	6.12(금) 오전	
	수도권	신규 8반	6.19(금)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예정)
		보수 8반	6.15(월) 오후	
3/4 분기	호남권	신규 9반	7.14(화)	전주대학교 온누리홀
		보수 9반	7.15(수) 오전	
	영남권	신규 10반	8.12(수)	대구 경일대학교 대강당
		보수 10반	8.13(목) 오전	
	수도권	신규 11반	8.26(수)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예정)
		보수 11반	8.25(화) 오후	
	호남권	신규 12반	9.8(화)	광주 테크노파크 국제회의장
		보수 12반	9.9(수) 오전	
	수도권	신규 13반	예정)9.18(금)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예정)
		보수 13반	예정)9.17(목) 오후	
4/4 분기	영남권	신규 14반	10.14(수)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보수 14반	10.15(목) 오전	
	수도권	신규 15반	10.23(금)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예정)
		보수 15반	10.19(월) 오후	
	충부권	신규 16반	11.3(화)	대전 KT인재개발원
		보수 16반	11.4(수) 오전	
	수도권	신규 17반	예정)11.20(금)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예정)
		보수 17반	예정)11.16(월) 오후	
	수도권	신규 18반	예정)12.16(수)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예정)
		보수 18반	예정)12.15(화) 오후	